

November 17,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60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11. 9. ~ 11. 13.)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합리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2020. 11. 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수출용 진단시약 품질검증 명문화, ②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 ③ 연구목적의 임상적 성능시험 절차 간소화, ④ GMP 심사 신뢰성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합리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개보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2020. 11.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고시를 제정하기 위해 공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안 제 4조), ② 결합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안 제 5조)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



[산자부1] 첨단산업 및 R&D센터 등에 대한 유턴 지원 강화

2020. 11. 10.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과 ‘소부장 2.0전략(7.9)’에서 발표한 유턴대책의 후속 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구시설) R&D 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 가능, ② (요건완화)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및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 등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 ③ (보조금)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첨단업종에 한정하여 수도권에도 보조금 지급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지원팀, 유턴 보도자료



[산자부2]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발표

2020. 11. 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함. 이번 성장전략은 기업 성장 전주기적(중소·벤처→중견→글로벌 전문기업)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및 역량을 진단하고, 침체된 기업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중소, 중견 등), 특성(업종, 지역 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30년 강소·중견기업군 매출, 수출, 일자리 등 경제기여도 30% 달성, ② 차세대 유망기업 12,000개, 지역경제 선도기업 600개 육성, 중소기업 대상 시설투자자금 지원규모를 '21년 1조원 수준으로 확대, ③ 소부장 등 혁신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30→150억원) 등 지원 확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과기부] 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개최

2020. 11. 1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변화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됨. 주요 주제로는 ①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1위 미래학자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제이슨 쉐커' 회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질서', ② 'ICT 기술발전에 따른 세계 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홍종 원장)', ③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대외 환경 변화와 우리 ICT 전망'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과 수출 전망 등이 발표됨

[참고자료] 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단계별 이행안 전략제품 197개 선정

2020. 11. 11.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21~'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별 이행안으로 30개 분야, 197개 전략제품을 선정함

< '21~'23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

*밑줄 : 신규

4차 산업혁명(20개)	중소기업 성장기반(10개)
①빅데이터 ②블록체인 ③5G+ ④인공지능 ⑤서비스플랫폼 ⑥실감형콘텐츠 ⑦드론 ⑧지능형로봇 ⑨스마트제조 ⑩자율주행차 ⑪시스템반도체 ⑫ 재난·안전 ⑬스마트시티 ⑭IoT ⑮바이오 ⑯ 의료기기 ⑰ 전기·수소차 ⑱이차전지 ⑲신재생에너지 ⑳ 친환경·자원순환	①유기화학 ②무기화학 ③금속 ④전기전자부품 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⑥정밀기계 ⑦일반기계 ⑧조선 ⑨식품 ⑩섬유

[참고자료] 중소기업 기술 단계별 이행안 전략제품 197개 선정



[기재부]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020. 11. 12. 기획재정부는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③ 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 ④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⑤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 ⑥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 ⑦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됨

[참고자료]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금융위]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2020. 11. 12.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데이터 제공방식 등에 대한 마이데이터 산업 논의 원칙을 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육성, ②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연계지원, ③ 협력적 생태계 조성: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력·소통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산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 판단기준 구체화, ② 제품·서비스의 동일성 인정기준 유연화, ③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증설 지원 대상 지역 확대 등이 있음

[환경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됨.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횟수 및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개별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임

> 입법예고 법안

[과기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과기부는 2020. 11. 9. 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정보 생성·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에 따른 요건 마련,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요건, 절차 등 개선, 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범위 명확화,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요건 개선 등이 있음

[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중기부는 2020. 11. 11. 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및 제외범위 설정, ② 소상공인의 날 지정, ③ 소상공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④ 소상공인 아닌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소상공인 시책에 참여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정무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21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0인)」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정무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등10인)」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등10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과방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21인)」

정보통신 상호간 또는 기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면, 새로운 유형의 갈등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과방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의원등12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자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6인)」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심사의 청구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규정을 두려는 것임

[국토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

[환노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등11인)」

정부로 하여금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과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서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T. +84-24-3245-4043

E. yjiseo@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